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내란죄·외환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의 절차 정지 관련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786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내란죄·외환죄와 관련된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 금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4. 12. 20.

(3) 회 부 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특히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

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1조).

Ⅲ. 검토의견

1. 내란죄·외환죄와 관련된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51조 단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 ----- ----- -----, 다만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정지할 수 없다.

나.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정지 규정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절(탄핵심판)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재판과 다른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 절차이므로 동일한 사유를 기초로 형사절차가 개시되고 있더라도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탄핵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민·형사 등의 다른 법적 절차의 개시·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동일한 위법사유를 기초로 탄핵심판과 민·형사 등 다른 법적 절차가 병립하는 경우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증거법칙에 의하여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¹⁾.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른 심판절차 정지 규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사유”가 있다고 하려면, ①탄핵심판이 청구된 바로 그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야 하고, ②탄핵심판의 소추사유와 형사소송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이 요구되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핵절차를

1)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688면.

진행하는 재판부가 사안의 성격, 탄핵대상자의 지위와 특성, 형사재판의 결과와 탄핵결정 결과와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²⁾.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³⁾, 권한행사 정지기간이 장기화되면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에는 관련된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른 탄핵심판절차의 정지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서 사안의 성격, 탄핵대상자의

2)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688~689면.

3)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지위와 특성, 형사재판의 결과와 탄핵결정 결과와의 상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바,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재판부의 재량권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규정에 따르면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한 판단을 탄핵심판 재판부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탄핵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 정지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 탄핵심판 절차 정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 탄핵심판절차의 정지 규정을 둔 취지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병립하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탄핵심판 재판부가 형사재판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바, 특정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하여 절차 정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형사재판과의 판단 상충의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하여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기간의 헌법적 기능 장애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과

재판부의 재량권에 대한 제한 및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절차간 발생할 수 있는 판단 상충, 법질서의 통일성 또는 신뢰성 저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8